

## [오크밸리 스키장 시즌권 이용약관 \_ 리프트 및 장비렌탈 시즌권]

###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아이파크리조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스키 및 스노우보드 애호가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상 요금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리프트 및 장비렌탈 시즌권(이하 '시즌권'이라 함)에 대해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에 시즌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소지하는 모든 권종의 시즌권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함)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이용자의 자격, 의무 및 시즌권 관리)

1. 이용자는 시즌권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주어져며, 구매 이력으로는 권리행사가 불가 합니다.(반드시 "시즌권"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만 회사의 고객으로 인정합니다.)
2. 시즌권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시즌권이 손상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시즌권의 사용은 제한되며, 전 항과 같습니다.
3. 시즌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소정의 재발급 비용은 '이용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시즌권 분실하였을 경우, 신고 이전에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시즌권 이용 시 반드시 시즌권을 직원에게 제시 후 필요에 따라 선글라스, 마스크, 모자 등을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6. 시즌권은 기명식 이용권으로 타인에게 대여 및 불법적인 사용을 제한하며, 적발 시 시즌권은 즉시 회수되며 환불 및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7. 이용자가 사정상 유효기간 중에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약관상 양도·양수규정 및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8. 리프트 이용 시 이용자 본인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 못한 경우, 회사는 재발급 및 무료리프트권 제공 (일일 이용권) 및 할인과 관련된 확인증 제공 의무가 없으며 이용자는 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9. 이용자는 안전을 위하여 오픈된 슬로프 이외 사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회사는 15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즌권의 사용을 제한 합니다.

10.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환불 및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이용자'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나. 시즌권을 타인에게 불법양도, 대여, 매매한 자

다. 규정된 본인 사진 등 필수 서류 제출 거부 및 위조 제출한 자

라. 본인 및 타인의 시즌권을 불법으로 위조한자

마.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바. 시즌권 검표에 비협조하는 자

사. '회사' 이용 중 다른 '이용자' 또는 직원의 신체나 정신·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여 '회사'의 방문 및 혜택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 3 조(사용기간 및 적용)

1. 시즌권의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 기간 : 2026 년 12 월 스키장 개장일 ~ 2027 년 2 월 스키장 폐장일
- 전일권 / 장비렌탈시즌권 = 기본 사용기간(스키장 개장 일로 부터 30 일) + 27 년 폐장일 까지
- 기본사용기간 이후 기간에는 양도/양수, 취소/환불 불가하며 이용에 대한 권리만 갖는다.

2. 시즌 기간 중 리프트 이용 횟수 및 장비렌탈 1 일 사용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천재지변,

기상여건(강풍, 우박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리프트 안전정비, 보강제설, 방역지침, 국내외 스키 관련 대회로 인한 슬로프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의 운행 및 장비렌탈 대여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상시 실시하는 검표 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검표원의 고글 , 마스크,헬멧 등 안전보호 장비 탈착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 시즌권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시즌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응 시 불가피하게 당일 이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5. 시즌권상품 중 무료 발급된 시즌권 및 오크밸리가 진행한 자녀무료, 경품이벤트, 판촉행사용, 시즌권 교환권 등은 유료 구매한 시즌권의 부가 혜택(경품, 제휴사할인 등)은 제외된다.

### 제 4 조(시즌권 재발급)

1. 회사는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심각한 훼손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즌권을 시즌권 이용자에게 재발급하며, 분실자의 시즌권 권리를 위하여 재발급 허용은 훼손/파손에 의한 재발급 1 회와 분실 및 도난 등에 의한 재발급 1 회, 총 2 회로 제한 합니다.

2. 시즌권 분실 또는 도난 시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서면(회사양식)으로 신고하고 회사는 재발급하며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인쇄비용 및 제작비 등을 포함하는 영업외적인 수수료로 30,000 원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업장에서 결제 합니다.
3. 오크밸리에서 무료 지급(발급)된 시즌권. 특별할인율이 적용된 특별시즌권, 양도·양수 받은 시즌권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4. 시즌권 재발급은 분실 접수 및 재발행 신청일자로 1 일 후(신규영업일 시작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도용 및 불법사용 제한을 위해 당일 신청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단, 발급진행 시 훼손 및 파손에 의한 재발급은 훼손/파손된 시즌권 반납이 반드시 되었을 때,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분실된 시즌권은 사용 정지되며,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을 경우에도 해당 시즌권의 사용은 불가하며 재발급 수수료의 환불도 불가합니다.
6. "시즌권" 부정사용으로 "시즌권" 말소 후 재구매(발급)를 원할 경우 현재 판매중인 상품에 한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7. 이용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발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회사'는 시즌권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 5 조(시즌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1. 본 시즌권 이용 중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양도·양수는 최초 구입자 기준 1 회에 한하며 명의변경수수료 30,000 원 납입 및 기 발급된 시즌권 (양도자 시즌권)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30 일 이후에는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되어 양도·양수가 불가능 합니다.
2. 양도 진행 시는 제출서류 [양도/양수자 신분증 사본] 및 증명서류와 발급된 시즌권을 반드시 제출 한 후 양도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카드 분실로 카드 미 반납상태에서 양도 진행 시 카드 재발급수수료(30,000 원)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시즌권의 양도/양수는 스키장 오픈 일로부터 30 일 까지 가능합니다. 단, 해외 이민이나 임신, 사망, 신체장애, 군입대, 유학, 부상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4 주 이상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즌 중 언제든지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시즌권자는 반드시 양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본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 제출시에는 불가 합니다. (임신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까지 가능)
4. 양도/양수 시 최초 구매 당사자에게 제공되었던 혜택은 제외 됩니다.
5. 양도/양수 시 동일 권종으로만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6. "구입 비용이 없는 시즌권"의 경우 온라인 재판매, 개인간 거래 및 오크밸리의 허가 없는 일체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며 양도된 이용권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7. **경품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발급된 무료/할인 시즌권, 분양회원에게 무료로 발급된 시즌권,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게 발급된 시즌권, 임직원 직계가족이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된 시즌권 등 특별 시즌권과 오크밸리 인근 장비샵 직원 및 지정면 주민에게 발급된 시즌권 등은 특별 판매상품으로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8. 2인 이상 또는 다른 상품과 결합으로 구성된 세트권 형태의 시즌권은 부분환불이 불가능하나,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 제 6 조(시즌권의 환불)

1. 시즌권(전일시즌권, 주중시즌권, 통합시즌권(눈놀이동산포함) 및 장비렌탈시즌권)의 환불은 가능하나 스키장 오픈 및 수령 전후의 환불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시즌권 구매 시 제공되는 부가혜택 이용 후 환불은 불가 합니다.  
\* 자녀 무료 시즌권 발급 이후 대인권 환불 요청 시 자동으로 자녀 무료 시즌권은 취소되며, 미성년시즌권 유료 구매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의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이용자"가 "시즌권" 환불 요청을 할 경우, 위약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스키장 오픈 전                         | 스키장 오픈 후                     |
|------------|----------------------------------|------------------------------|
| "시즌권" 수령 전 | 위약금 없음                           | 구매금액의 10% 공제                 |
| "시즌권" 수령 후 | 구매금액의 10% 공제<br>시즌권 발급 제반수수료 3만원 | 발급카드 회수 후<br>"회사"의 위약규정 일별차감 |

※ 사은품을 제공 받은 후 취소할 경우 10% 추가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 1) 스키장 오픈 후 및 시즌권 수령 후 환불 요청 시
  - (1) 시즌권 :  $\text{구매금액} - \text{위약금}(\text{구매금액의 } 10\% + \text{시즌권 발급 제반수수료 } 3 \text{만원}) - (\text{사용 일수} \times \text{구매금액} \div 30 \text{일})$
  - (2) 정의
    - ① 사용일수 : 시즌권 수령일부터 시즌권 반납일수 (최대 30 일 이내)
    - ② 사용일수를 초과한 상품은 환불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 26/27 시즌 스키장과 눈놀이동산의 개장 및 폐장일은 상이할 수 있으며, 위약 기준은 스키장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3. 환불 요청 일시는 당사의 시즌권 회수시점, 위약금 및 수수료 입금기준으로부터 적용 되며 시즌권 카드 분실 등으로 인한 미보유 상태에서 환불 진행 시 환불금에서 30,000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4. 시즌권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전일권 : 스키장 개장일부터 기본사용 제공기간인 30 일 이내
5. 시즌권상품 중 무료 발급된 시즌권 및 오크밸리가 진행한 자녀무료, 경품이벤트, 판촉행사용, 시즌권 교환권 등 구입비용이 없는 시즌권 및 프로모션 시즌권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자녀 무료시즌권 발급 시 소요되는 30,000 원은 발급 비용으로 시즌권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이 불가 합니다.
6. 시즌권과 함께 제공된 패키지 상품(사은품, 객실이용권, 무료 교환권등)의 파손, 변질, 포장개봉, 소비자의 단순 변심 등의 사유는 환불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부분 사용에 따른 잔액 환불은 불가 합니다.
7. 해당 시즌권의 제공된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떠한 사유에서도 환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제 7 조(시즌권 부정사용 및 분실신고)

1. 본 약관을 위반하여 시즌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본인포함) 또는 부정 사용 한 자에게 귀속됩니다.
2. "시즌권" 부정 사용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 1) 시즌권을 시즌권자 본인 외 제 3 자가 이용한 경우
  - 2) 회사가 발급한 기준년도 시즌권 이외의 시즌권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 3) 시즌권의 이용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4) 제 5 조 제 6 항의 양도 및 환불이 불가한 시즌권을 양도·양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 5) 타인의 개인정보 및 자회사의 정보를 도용하여 시즌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시즌권데스크(발급처)에 지체 없이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부정하게 사용되다 적발된 시즌권은 회수 및 폐기 처리되며, 해당 시즌권의 재발급은 불가하며, 부정사용자는 적발당일 이후 부정사용 건에 대해 형법 제 347 조에 해당하는 사기죄와 형법 제 236 조에 해당하는 사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처리 됩니다.
5.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사용한 자의 경우 형법 제 347 조에 해당하는 사기죄와 형법 제 236 조에 해당하는 사문서부정행사죄, 형법 제 329 조와 제 360 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고소(고발)처리 됩니다.
6. 분실된 시즌권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시즌권 이용자(구매자)가 형법 제 360 조에 해당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7. 시즌권 분실신고 한 이후에 시즌권이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었다면 부정사용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할 경우 상기 제 4 조 시즌권 재발급 규정에 따라 시즌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시즌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정지, 회수 및 폐기처리는 시즌권(고유번호)에 대한 폐기이며 잔여사용기간과는 무관합니다.
10. 상기 제 7 조 5 항에 명시된 사기죄에 대한 피해자('HDC 리조트')의 합의금 청구액은 시즌권 판매금액의 10 배 이내에서 합의할 수 있다.
  - ◆ 상기 제 7 조 10 항에 의거하여 합의금 청구액은 피해자만 조종할 수 있으며, 합의불가 시 제 7 조 4,5 항에 의거하여 고소(고발) 조치한다.

## 제 8 조(개인 정보 이용 동의)

시즌권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변경, 개선, 혜택 등의 알림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고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와 계약/지정된 대행사에서 발송하는 E-mail, SMS, 기타 홍보물 발송 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제 9 조(변경승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www.oakvalley.co.kr](http://www.oakvalley.co.kr)) 게재 등을 통해 적용 예정일로부터 7 일 이전까지 공지하며, 이용자가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서비스 또는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10 조(면책)**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 적인 사유(리프트 고장 및 정전, 정부정책 등)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 11 조(기타)**

-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릅니다.
- ▷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 시즌권 구입시 주민등록번호 도용, 공문서(주민등록등본 등) 위조 시에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습니다.
- ▷ 에이치디씨리조트에서 미성년의 기준은 만 19 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본 약관은 시즌권 공식 판매 개시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이파크리조트 주식회사